

## 전기용품안전인증

##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현재 다이어트용 운동기를 제조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동용품은 전기안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에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는 이 운동기구를 전기맛사지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전기맛사지에 대한 정확한 전기용품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정확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맛사지기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므로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맛사지기는 바이브레이터, 전동기 회전에 의한 진동을 이용하여 인체에 맞사지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담당자 : 오재철(02-509-7236)

**Q** 저희가 납품하는 곳에서 믹서기와 면도기 몇종에 대해서 K마크가 안 붙어있다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나오는 믹서기제품에는 K마크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만 진열된 같은 품목중에 K마크가 아닌 (전)이라는 마크가 있다구 합니다. K마크가 시행되기전 (전)이라는 마크를 사용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전)이라는 마크가 K마크를 대신할수있는지 아니면 K마크가 있는 제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면도기는 충전아답타가 있는 제품에 한해 K마크를 필요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충전용 아답타가 없는 면도기는 K마크 대상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2000년 7월1일 부터 형식승인에서 안전인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교류50V~1000V를 사용하는 전기용품 중에 별표2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충전 아답타는 전기충전기로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되나 교류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직류를 사용하는 면도기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